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2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 : 임오경 · 오영환 · 김민철

서영교 • 박상혁 • 고용진

박홍근 • 이수진 • 박성준

한준호 • 박 정 • 이병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인 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 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①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	
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u>	2. <u>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u>
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행위의 금지	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를 포함한다)의 금지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